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

구 미 시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'15.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「대경거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수행기관의 원활한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
 - 위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 - 사용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 - 감면기간 : '19. 7. 1. ~ '20. 6. 30. (12개월)
 - 사용면적 : 724.5㎡(1층 535.5㎡, 2층 189㎡)

3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17조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4. 참고사항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

- 위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규모 : 3,882.9m², 지상1층 ~ 4층
- 건립비 : 35.7억원(도11, 시 24.7) ※ 준공일 : '16. 2. 29
- 사업내용 : 3D프린팅 센터구축, 연구개발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
-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: 구미시(신산업정책과) 직접운영
 -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수행기관)

위치도



관계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(이하 "정부출연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

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
[별 표]

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(제8조제1항 관련)

기 관 명	
1. 한국과학기술연구원	11. 한국표준과학연구원
2.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12. 한국식품연구원
3. 한국천문연구원	13. 삭제 <2011.12.31>
4. 한국생명공학연구원	14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5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15. 한국기계연구원
6. 한국한의학연구원	16. 한국항공우주연구원
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	17.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8. 한국전자통신연구원	18. 한국전기연구원
9. 한국건설기술연구원	19. 한국화학연구원
10. 한국철도기술연구원	20. 한국원자력연구원

소관 실·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용 보
	담 당	이 병 문
	담 당 자	이 민 규 (480-6175)